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측정대행업자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84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등으로 정하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한국환경공단 및 측정대행계약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장 이 재 갑

●대통령령 제3107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90일”을 “30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에게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이하 이 호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 나.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훈련
 - 다.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총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 라.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아닌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 마.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아닌 사업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 바.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을 “제41조제1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5호다목·마목 및 제4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속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과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제21조의3제1항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보전하는 조치를 3개월 이상 한 후 근로자에 대하여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함.

나. 사업주의 유급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요건 완화(제41조제1항제5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기간 동안에 3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 18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재 갑

●대통령령 제3107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850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는 경우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 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제28조제3항 중 “기술교육대학”을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1.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 2.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
 - 3. 훈련생에 대한 지도 및 상담
 - 4. 훈련성과 및 훈련생에 대한 평가
 - 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보수교육의 시간은 24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